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5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2276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재단법인 화랑청소년육영재단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2. 24.
판 결 선 고	2017.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60,624,0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6,062,4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3,031,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1)]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2012 취득세 수시분(02월분 과세번호 006754) 299,717,600원의 부과처분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기재하였으나, ① 납세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지는데(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조세의 귀속주체인 국가 또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5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2) 원고는 2011. 9. 9. 주식회사 [redacted]주택(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6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5억 원은 2011. 9. 23., 잔금 23억 1,000만 원은 2011. 10. 31. 각 지급하되, 중도금 45억 원 중 40억 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과 동시에 소외 회사의 [redacted]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40억 원을 인수하고 [redacted]농협으로부터 추가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소외 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취득세 등의 감면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소외 회사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9. 22.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1. 9. 22. 접수 제51746호)받았다.

2) 그리고 원고는 2011. 9. 22.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아울러 과세표준을 65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

[redacted]광역시를 피고로 삼지 않고 과세관청인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을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 점, ② 소장의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에서는 피고의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를 피고로 하여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인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취득세 260,624,0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6,062,4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3,031,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5

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감면받았다.

다.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및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2. 1. 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1. 3. 접수 제254호)해주었다.

2) 이에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가 정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260,624,000원(가산세 624,000원 포함), 지방교육세 26,062,400원(가산세 62,4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3,031,200원(가산세 31,200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지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이하 '제1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5

장'이라 한다).

2) 설령, 지방세법의 해석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합의해제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준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가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해제에는 당초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단 적법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5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참조).

⑵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그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제2항)로 정하되, 그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11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문언, 형식 및 체재 등에 더하여 우리 민법이 소유권의 발생요건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물권적 합의인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지면 그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곧바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⑴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소외 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상 정해진 중도금 지급방법의 일환으로 소외 회사의 동대구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40억 원 인수 및 추가 5억 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내부관계에서 잔금 지급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 처분하지 아니할 채권적 의무는 있을지언정, 매매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고(대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5

1995. 2. 28. 선고 94누938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9조에도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2) 나아가, 일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원고와 소외 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는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제11항에 따라 취득일 전에 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그 계약해제 사실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고 있지도 않다].

(3)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우선, 원고가 합의해제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준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가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94조는 일정한 청소년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제1호) 및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5

사용하는 경우(제2호)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한 후 약 4개월 만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를 반환하게 된 경우도, 위 규정이 정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가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 즉 '이 사건 부동산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5

상에 고등학교를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운동장이 없고 전체 면적이 부족하여 당초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는 것이나 '근저당권자들이 승낙하지 않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령이나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은 명백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③ 오히려 원고의 부주의 내지 무자력 등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많은 점,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본래 과세되어야 할 대상에 관하여 사업목적이나 부동산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과세 감면의 혜택을 시혜적, 정책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세 감면의 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에도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배제하는 사유인 '정당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이처럼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5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의 취득 여부, 합의해제가 그 취득에 미치는 영향, 감면된 세액의 추징사유 해당 여부, 그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 이혜랑

판사 박상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5

별지 1.

목 록

1. [redacted]구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공장용지 974㎡

2. [redacted]구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대 1,404㎡

3. [redacted]구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지하1층 지상6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다방) 186.91㎡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907.22㎡

1층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571.55㎡

1층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271.78㎡

2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820.8㎡

3층 철근콘크리트조 문화및집회시설(예식장) 410.33㎡

3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410.47㎡

4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444.345㎡

4층 철근콘크리트조 문화및집회시설(예식장) 446.055㎡

5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486.59㎡

5층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403.81㎡

6층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26.20㎡

6층 경량철골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73.14㎡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5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④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⑥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5

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 등과 유사한 청소년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25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끝.